

6·25의 법적 조명이라는 이번 주제를 보면서 사실 6·25가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다른 방면에서는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만 저희 법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부분인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충하는 곳도 있지만 발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제일 저에게 눈 여겨 보여지는 것은 그런 전시 상황에서도 국회활동이 상당히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 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 문제라든지 그것을 정치적 현실과 관련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나온 정치현실과 결과를 배제의 원리를 통하여 설명했는데, 말하자면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배제가 된 사항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헌법의 정통성에 관한 한계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국회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6·25와 법을 논의하는 것도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국회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상황에서 행정부도 행정부 나름대로 전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야되는 그런 변수도 있습니다만, 서로 대립 견제하면서 진행해 올 수 있던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상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파, 중도파가 배제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일견 우리에게 가장 민주적인 시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물론 국가제도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돈도 잘 되어 있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문민정부와 군사정부와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상희 교수님께서 국회의 역할을 정치적 논리와 관련하여 설명하셨는데 현재 우리 국회가 좀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이 제시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박 정훈 교수님께서도 국회 활동을 강조하셨는데, 뒤에 정치적 배경을 밝힌 한상희 교수님과와는 다른 각도지만,

* 慶南大學校 法學科 教授

국회가 이와 같이 전시 속에서도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여소야대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이 있었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인섭 교수께서도 국회를 높이 평가했는데 이런 등등을 우리가 단순히 여소야대만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국회의 관계, 그 당시에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정당의 결속이 덜 했기에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 행정부에 대립되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국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권 교수님께 헌법 제3조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영토조항을 우리가 넣게 된 배경과 그 동안 영토조항의 역할을 보면 남북분단 구조 속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후 이제는 제4조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로서는 이것을 영토조항과 상호보완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토조항이 단순히 선언적이라고 보아 평화통일조항하고 보완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면 그때 우리 영토가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선언 내지 방침으로 보기에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에 북한사람, 소위 말하는 탈북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토조항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법원도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의 국민이라고 판결한 적도 있지요. 영토조항 제3조를 근거로 현재 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냥 방침으로 그치는 게 아니므로, 혹시 헌법 개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좀 없어져야 하는 조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토조항에 관하여 혹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최고수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대우 교수님께서 아까 독일하고 비교를 좀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혹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법적인 독일에 비한다면 상당히 낙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일제지배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는 않은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점에서 잠깐 문제제기 내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